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910호(號) 1930년(昭和 5) 1월 17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3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(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0(昭和 5)년 1월 17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내지발착 특정임률(內地發著 特定賃率)의 부문[部] 면포(綿布: 무늬가 없는 직물[無地物]. 단[但] 고무를 교직[交織]하였거나 또는 도포[塗布]한 것을 제[除]함)의 항(項) 발역란(發驛欄) 「오카야마(岡山)」의 다음에 「, 히코사키(彦崎)」를, 「야나이(柳井)」의 다음에 「, 야나이항(柳井港)」을, 임률란(賃率欄) 성선(省線) 내(內) 「오카야마발(岡山發) 0.70」의 다음에 「히코사키발(彦崎發) 0.80」을, 「야나이(柳井)」의 다음에 「, 야나이항(柳井港)」을 추가(追加)함.

동(同) 면포(綿布: 옷 한 벌 크기의 직물[著尺物] 및 고무를 교직[交織]하였거나 또는 도포[塗布]한 것을 제[除]함)의 항(項) 발역란(發驛欄) 「오카야마(岡山)」의 다음에 「, 히코사키(彦崎)」를, 「야나이(柳井)」의 다음에 「, 야나이항(柳井港)」을 추가(追加)하고, 임률란(賃率欄) 성선(省線) 내(內) 「오카야마발(岡山發) 0.70」을 「오카야마발(岡山發) 0.60」으로 개정(改正)하며, 그 다음에 「히코사키발(彦崎發) 0.70」을, 「야나이(柳井)」의 다음에 「, 야나이항(柳井港)」을 추가(追加)함.

성선(省線), 만철선(滿鐵線) 발착(發著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면포(綿布: 옷 한 벌 크기의 직물[著尺物] 및 고무를 교직[交織]하였거나 또는 도포[塗布]한 것을 제[除]함)의 항(項) 발역란(發驛欄) 「야나이(柳井)」의 다음에 「, 야나이항(柳井港)」을, 임률란(賃率欄) 성선(省線) 내(內) 「야나이(柳井)」의 다음에 「, 야나이항(柳井港)」을 추가(追加)함.